

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  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76호
- 나. 제출자 : 윤영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2. 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2. 2.

## 2. 제안이유

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과 상이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의 제명 및 시행령 조항 변경(안 제1조).
- 나. 위원회 위원 수 확대(안 제2조).
- 다. 위촉직 위원의 성별 관련 규정 추가(안 제2조).

## 4. 관계법령

-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 2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이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로 제명이 변경(2014.06.03.)되고 시행령이 2023. 6. 9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명 및 시행령 조항을 변경하고 시행령에 맞춰 위원회 인원 및 성별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-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##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11. 16.] [법률 제19047호, 2022. 11. 15., 일부개정]

**제91조(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)**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13. 3. 23., 2020. 2. 18., 2022. 6. 10.>

1.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2. 지명 관련 법령,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·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시·도 지명위원회를 두고, 시·군 또는 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22. 6. 10.>

③ 국가지명위원회, 시·도 지명위원회 및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신설 2019. 12. 10., 2022. 6. 10.>

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시·도 지명위원회와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9. 12. 10., 2022. 6. 10.>

[제목개정 2022. 6. 10.]

##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23. 11. 16.] [대통령령 제33847호, 2023. 11. 7., 일부개정]

**제88조의2(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)**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
2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
3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
4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
5. 시·군·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,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

[본조신설 2023. 6. 9.]